

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98
----------	------

2014년 2월 19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14년 2월 10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51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4년 2월 19일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가. 제안이유

- 세빛둥둥섬 운영정상화를 위한 합의서(2013. 9.12)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세빛둥둥섬 이용기회를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사업시행자는 세빛둥둥섬 공공성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정상운영개시 2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서울시는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안 제5조)

- 사업시행자는 승인받은 공공성 확보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제출하고, 서울시는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 (안 제6조)
-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도별 시행완료 내역 정산(안 제7조)
-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 미이행시 이행촉구 및 잔액에 대한 지체 상금 청구(안 제8조)
- 사업시행자 지위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공공성 확보계획 시행승계 (안 제10조)
-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8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안석수)

가. 개요

- 「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가 부과한 지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익성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세빛둥둥섬의 운영정상화 및 시민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제안배경

- 세빛둥둥섬은 반포한강공원 남단에 조성된 인공섬으로 한강르네상스 중점 사업의 하나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조성된 수상복합문화 공간임.

· 위 치 : 반포 한강공원 남단(서래섬과 잠수교 사이)				
· 규 모 : 3개섬 9,995㎡				
구 분	계	1섬	2섬	3섬
면 적	9,995㎡	5,523㎡	3,449㎡	1,023㎡
주 용 도		- 컨벤션 등	- 다목적 홀 - 공연장(행사장)	- 수상레포츠 공간 - 소형 컨벤션
수용인원	5,385명	3,600명	1,450명	335명

· 총사업비 : 1,390억원 (자기자본 429억원)
 · 사 업 자 : (주)플로섬
 · 운영기간 : 20년 운영후기부채납(BOT 방식) + 10년 유상사용
 · 준 공 일 : 2011.9.30

- 세빛둥둥섬은 2011년 9월 30일자로 준공되었으나, 연결도교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운영사업자를 구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서울시는 「플로팅아일랜드 조성 및 운영 사업협약서」 1) 제37조제1항 및 제42조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주)플로섬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있음.
- (주)플로섬은 추가로 연결도교에 대한 구조개선공사²⁾를 완료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임대방식이 아닌 직영체제로 운영하기로 하는 등 세빛둥둥섬의 운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2013년 9월 서울시와 (주)플로섬은 「세빛둥둥섬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무상사용기한 30년 → 무상 20년 + 유상 10년
- 기부과된 지체상금은 공공성 추가 확보에 전액투입
- 기부채납은 후기부채납(BOT) 방식 유지
- 무상사용기간 기산일은 정상운영을 개시하는 날로 하되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년을 넘기지 않음
- 해지시 지급금, 총선순위채무 상환계획은 추후 협의 계속,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객관적인 제3기관을 통한 분쟁해결

- 동 조례안은 (주)플로섬이 서울시에 납부해야 할 지체상금을 현금이

1) 「플로팅 아일랜드 조성 및 운영 사업 협약서」 제37조(이행지체) ① 본 사업시설이 사업시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에서 정한 기간내에 준공·운영 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0.1%를 지체일수에 곱하여 현금으로 한강사업본부에 납부해야 한다.
제42조(사업시행자귀책사유) 5.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본 사업시설의 운영을 60일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중단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2) 연결도교 구조개선 공사는 기존 연결도교를 완전히 철거하고 비가 많이 올 경우 섬과 분리될 수 있는 구조의 도교로 만들어 운영의 편리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비 72억원은 총사업비에 반영되지 않았음

아닌 해당금액에 상당하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다. 조례제정의 필요성

- 「지방재정법」 제8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서울시가 (주)플로섬에 부과한 지체상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협약서상에 명기되어 있어 (주)플로섬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이를 상계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 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함.

라. 주요 검토의견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동 조례안은 세빛둥둥섬의 운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인 (주)플로섬이 맺은 「세빛둥둥섬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중 공공성을 확보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그런데 서울시가 부과한 “지체상금”이나 “합의서”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공공성 확보계획, 연도별시행계획, 비용정산(안 제5조 ~ 안 제7조)

- 사업시행자는 세빛둥둥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공공성확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자문을 거쳐 승인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5조, 안 제6조).
- 또한 사업시행자는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이행하고, 그 내역을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시 위원회에 보고하고, 서울시의 정산을 받도록 하고 있음(안 제7조)
 -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내역을 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장에게 먼저 제출하고 시장이 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3) 지체상금의 청구(안 제8조)

-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성 확보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지체상금을 다시 청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음
- 이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공성 확보계획을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4) 시의회 보고(안 제9조)

- 한강사업본부장은 매년 공공성 확보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사항을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안 제9조).

5)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안 제11조 ~ 안 제17조)

- 시장은 세빛등등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변경계획 포함), 연도별 세부실행계획(변경계획 포함), 실행계획의 이행완료 내역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세빛등등섬 사업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이 있음
 - 당연직 위원으로 한강사업본부장과 사업시행자가 규정되어 있는데 공공성 확보계획, 연도별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시행자를 당연직위원으로 하는 것은 안 제14조제1항제2호의 제척사유³⁾에도 해당되므로 이를 삭제해야 할 것임.

3)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참고 법령

□ 지방재정법

제86조(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지연배상금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금액·납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 18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 플로팅 아일랜드 조성 및 운영 사업협약서

제37조(이행지체) ① 본 사업시설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에서 정한 기간내에 준공·운영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0.1%를 지체일수에 곱하여 **현금으로** 한강사업본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은 공사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신설하고, 사업 시행자의 대표자가 공공성확보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삭제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세빛등등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698
----------	------------

제안년월일 : 2014년 2월 19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누락되고, 공공성 확보심의위원회
회의 당연직 위원에 사업시행자의 대표자가 포함되는 것은 제척사유
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정 보완함.

2. 주요 골자

-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제5호~제7호)
- 전년도 세부실행계획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 공공성 확보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서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삭제함
(안 제12조)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합의서”란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과 사업시행자가 세빛둥둥섬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체결한 협약서 및 합의를 말한다.

6. “사업시행자”란 세빛둥둥섬을 조성한 (주)플로섬을 말한다.

7. “지체상금”이란 플로팅아일랜드 조성 및 운영사업 협약서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이 (주)플로섬에 부과한 금액을 말한다.

○ 안 제7조 중 “위원회에 보고하고”를 “시장에게 제출하고”로 한다.

○ 안 제11조 중 “적절한”을 삭제한다.

○ 안 제12조제3항제1호 중 “,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명”을 “3명”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4.(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4.(조례안과 같음)</p> <p>5. <u>“합의서”란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과 사업시행자가 세빛등등섬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체결한 협약서 및 합의서를 말한다.</u></p> <p>6. <u>“사업시행자”란 세빛등등섬을 조성한 (주)플로섬을 말한다.</u></p> <p>7. <u>“지체상금”이란 플로팅아일랜드 조성 및 운영사업 협약서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이 (주)플로섬에 부과한 금액을 말한다.</u></p>
<p>제7조(시행완료내역 정산) 사업시행자는 제6조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은 연도별 세부실행계획을 시행하고, 매년 그에 관한 완료내역을 다음 연도 세부시행계획 심의시에 <u>위원회로 보고하고</u> 서울시의 정산을 받아야 한다.</p>	<p>제7조(시행완료내역 정산) 사업시행자는 제6조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은 연도별 세부실행계획을 시행하고, 매년 그에 관한 완료내역을 다음 연도 세부시행계획 심의시에 <u>시장에게 제출하고</u> 서울시의 정산을 받아야 한다.</p>
<p>제11조(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설치)</p> <p>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빛등등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시 세빛등등섬 사업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1.~3. (생략)</p> <p>4. 공공성 확보계획의 <u>적절한</u> 시행에 필요</p>	<p>제11조(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설치)</p> <p>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빛등등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시 세빛등등섬 사업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1.~3. (조례안과 같음)</p> <p>4. 공공성 확보계획의 시행에 필요하다고</p>

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2조(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한강사업본부장,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2. 위촉위원 : 시의원 1명, 변호사 1명 및 공인회계사 1명, 공공성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기업·학계 등에서 공공성관련 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2명

판단되는 사항

제12조(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구성)

① ~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한강사업본부장
2. 위촉위원 : 시의원 1명, 변호사 1명 및 공인회계사 1명, 공공성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기업·학계 등에서 공공성관련 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명

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빛둥둥섬 운영 정상화를 위한 2013년 9월 12일자 합의서에 따라 세빛둥둥섬 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서울특별시 사이의 분쟁을 해소하고 그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세빛둥둥섬 이용 기회를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빛둥둥섬”이란 반포대교 남단 한강수면 위에 조성한 3개의 인공섬을 말한다.
2. “미디어아트갤러리”란 세빛둥둥섬 옆 한강수면 위에 조성된 무대를 말한다.
3. “세빛둥둥섬 사업”이란 세빛둥둥섬 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투자하여 조성한 세빛둥둥섬 및 미디어아트갤러리와 관련하여 시행하는 각종 행사 및 영업활동을 말한다.
4. “공공성”이란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의 세빛둥둥섬 이용 기회 확대와 관련한 사항 등을 말한다.
5. “합의서”란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과 사업시행자가 세빛둥둥

섬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체결한 협약서 및 합의를 말한다.

6. “사업시행자”란 세빛둥둥섬을 조성한 (주)플로섬을 말한다.

7. “지체상금”이란 플로팅아일랜드 조성 및 운영사업 협약서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이 (주)플로섬에 부과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빛둥둥섬 사업의 시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적용한다.

제4조(운영 정상화)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 모든 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빛둥둥섬 운영 정상화를 위한 2013년 9월 12일자 합의서(이하 ‘합의서’라 한다)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시행자의 협약서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공성 확보계획

제5조(공공성 확보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합의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추가 확보를 위한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이하 “공공성 확보계획”라 한다)을 제출받아야 하며, 공공성 확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세빛둥둥섬 사업 관련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세빛둥둥섬 운영시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의 공공성 확보계획은 세빛둥둥섬 정상운영 개시일로부터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간까지 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합의서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을 개시하기로 한 날로부터 2개월 전까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공공성 확보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공공성 확보계획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시장이 승인한다.
- ⑤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서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을 전부 이행하는 경우, 시장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체상금 청구를 철회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5조에서 승인받은 공공성 확보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세부시행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연도별 세부실행 계획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시장이 승인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제5조제4항 및 이 조 제2항에 의하여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과 연도별 세부실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되,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시행완료내역 정산) 사업시행자는 제6조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은 연도별 세부실행 계획을 시행하고, 매년 그에 관한 완료내

역을 다음 연도 세부시행계획 심의 시에 시장에게 제출하고 서울시의 정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지체상금) 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 및 변경계획을 사업시행자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경우 시장은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이행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공성 확보계획에 따라 이미 이행된 사항에 의하여 정산된 금액을 공제하고 이미 부과한 지체상금의 남은 잔액(매년 물가상승률 포함)에 대하여 다시 청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7조에 의한 시행완료내역 정산 후 7일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위 정산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지체상금 잔액을 승인하는 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시의회 보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은 매년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공공성 확보계획과 그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성 확보계획 시행 승계)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시장은 본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제11조(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

공공성 확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 사업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1. 공공성 확보계획 및 변경계획에 대한 사항
2. 공공성 확보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실행 계획 및 변경계획에 대한 사항
3. 연도별 세부실행계획 완료내역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공공성 확보계획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그 밖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당연직 위원 : 한강사업본부장
2. 위촉위원 : 시의원 1명, 변호사 1명 및 공인회계사 1명, 공공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기업·학계 등에서 공공성관련 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명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한강사업 본부 담당과장이 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된 서울시 공무원 및 사업 시행자 관계자와 전문가에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처리한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 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수당지급)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

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자, 회의에 필요한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심의·자문 등 별도의 작업이나 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존속기한) 위원회 존속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빛등등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 시행완료시까지를 운영기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